

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27호
- 다. 제출일자 : 2022. 7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7. 14.

2. 제안사유

-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, 서울교통공사를 설립·운영하고 있음
- 이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,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시민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을 2022회계연도 우리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(출자기관) : 서울교통공사

나. 주요 사업

-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
-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(1역사 1동선 구축 관련)
-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
- 가산디지털단지지역 혼잡도 개선
-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

4. 참고사항

- 기관현황

기 관 현 황

- ▶ 설립일자 : 2017. 05. 31
- ▶ 설립목적 : 지하철(1~8호선) 건설·운영 및 부대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
- ▶ 소재지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(용답동)
- ▶ 조직현황('22. 2월 기준)
 - 본 사 : 사장, 감사, 6본부, 6실, 42처
 - 현 업 : 1부문, 2원, 1단, 10센터, 58사업소
- ▶ 인력현황('22. 2월 기준) : 정원 16,306명 / 현원 16,606명

○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예산조치 :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(추경2차)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2022년도 서울교통공사 출자사업 현황(추경2차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출자액(안)	비 고
계	34,034,080	
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1,000,000	- 국비매칭
지하철 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961,000	
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	12,289,000	- 1역사 1동선 확보 관련
지하역사 공기질 개선	15,697,080	- 국비매칭
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	1,800,000	
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	△3,013,000	- 국비매칭
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	2,600,000	
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사업	2,700,000	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출자하기 이전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검토의견

■ '22년 지하철 분야 출자 내용(추경 예산편성)

-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으로 1,617억 45백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, 이번 추경을 통해 총 452억원(27.9%)을 추가 증액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

동 동의안은 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(10억원), 지하철 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(9억 61백만원), 지하철역 승강편의 시설 설치(122억 89백만원),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(156억

97백만원),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(18억원),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(△30억 13백만원),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(26억원),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사업(27억원)등과 관련한 추가 예산편성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※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사업관련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0년			2021년			2022년			
	합계	본예산	추경	합계	본예산	추경	합계	본예산	제1회 추경	제2회 추경
합 계	168,000	144,243	23,757	132,977	116,468	16,508	140,866	104,211	4,908	31,747
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43,024	24,967	18,057	64,191	64,191	-	27,653	26,653	-	1,000
지하철 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35,270	35,270	-	26,950	26,950	-	20,838	19,877	-	961
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	40,300	34,600	5,700	22,927	17,050	5,877	28,846	11,649	4,908	12,289
지하역사 공기질 개선	49,227	49,227	-	18,909	8,277	10,631	61,729	46,032	-	15,697
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	179	179	-	-	-	-	1,800	-	-	1,800
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	-	-	-	-	-	-	8,153	11,166	-	△3,013
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	-	-	-	-	-	-	2,600	-	-	2,600
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사업	-	-	-	-	-	-	2,700	-	-	2,700

■ 출자 동의안 의의

-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1항1)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

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2)에 따라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는 같은법 제53조3)에 근거하여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4)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

- 이에 동 동의안은 '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⁵⁾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

■ 출자 동의 필요성

-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기준 영업연장 312.3km, 지하철역 278개역, 전동차 3,563량을 운영하면서 일평균 약 559만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나 총수익은 1조 6,802억원인 반면 총비용은 2조 6,446억원으로 당기순손실 9,644억원, 부채 6조 6,072 억원에 달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

-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- 2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.
 - 3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 물로 출자한다.
 - 4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- ② (생략)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- 5)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(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- 5653호, 2015.10.19.)

- 특히,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와 노인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,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시행, 5년간 요금동결 등으로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⁶⁾이 50.2%에 불과한 실정으로 서울교통공사 자체 운영수입만으로 서울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
- 따라서,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질 개선 사업 등의 시설 개선을 서울교통공사 자체적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예산에 대한 출자 동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
- 특히,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6개 지하철 역사 중 13개 역사에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행중이기는 하나 서울시가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을 100% 확보하기로 발표함⁷⁾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자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
- 다만, 동의안의 의결은 관련법에 따라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

6) 지하철 일인당 수송원가 (‘21년 결산기준, 단위 : 원)

구 분	수송원가	평균운임	부족액	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
서울교통공사	1988	999	989	50.2%

- ※ 수송원가 = 총괄원가(영업비용+자본비용(관리운영권상각비 미포함))/수송인원(승차인원기준)
- ※ 평균운임 = 운수수입/승차인원 ※ 부족액 = 수송원가-평균운임
- ※ 수송원가대비 평균운임율 = 평균운임/수송원가

7) 보도자료, 「오세훈 “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”」, 2022.4.19

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 등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매칭예산 투입여력, 국비지원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

아울러 서울시는 출자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·감독하여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
- 한편, 「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별 설명서」 8)에 따르면 ‘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’ 사업 출자금이 30억 13백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

동 동의안 붙임 자료에는 ‘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’ 사업에 81억 53백만원을 출자 편성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총 출자 총액도 실제 340억 34백만원이 아닌 452억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

8)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별 설명서

○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(A)	기정예산(B)	증감(A-B)
계	(x3,494,000) 11,647,000	(x4,785,000) 15,951,000	(x△1,291,000) △4,304,000
공사·공단자본대출금	(x3,494,000) 3,494,000	(x4,785,000) 4,785,000	(x△1,291,000) △1,291,000
출자금	(x-) 8,153,000	(x-) 11,166,000	(x-) △3,013,000